

	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	제 정 일	2021. 7. 1
		개 정 일	2023.11. 1
		개정차수	6차
		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사제도 유연성을 통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교육과정(이하 “융합전공”이라 한다)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변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자동차 분야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2. 1)

제 2조 (정의) ① ‘융합전공’이란 모집단위와는 별개로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융합하여 교육과정 을 편성·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.

② ‘주관학과’란 참여학과 중 융합전공을 대표하여 운영하는 학과(전공)를 말한다.

③ ‘참여학과’란 융합전공 설치에 참여하는 학과(전공)를 말한다.

④ ‘정규형’이란 재학생 중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의 첫 학기부터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 (개정 2022.12. 1)

⑤ ‘축소형’이란 재학생 중 융합전공의 일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 (개정 2022. 2. 1, 2022.12. 1)

⑥ ‘확대형’이란 기존 정규형을 제외한 재학생 중 새로이 정규형으로 편입되어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 (개정 2022. 2. 1, 2022.12. 1)

제 3조 (교육과정 유형)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교과목 구성 및 수강 대상자에 따라 ‘코스’, ‘트랙’으로 구분된다. (개정 2021.10. 1, 2022. 2. 1)

제 4조 (교육과정 대상 및 방법) ① ‘정규형’ 2년제 모집단위의 경우 1학년 2학기부터, 3년제 모집 단위의 경우 2학년 2학기부터 운영되며,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정규 참여학생들은 3학기 동안 ‘정규형’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, ‘코스’ 교육과정을 이수한다. (개정 2021.10. 1, 2022.12. 1)

② 융합전공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도 ‘축소형’ 교육과정 혹은 ‘확대형’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 (개정 2021.10. 1)

③ 코스별 최소 20학점 이상 편성한다.

④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편성학점 중 20학점 이상 이수하고, 16학점 이상을 동일 코스 교과목으로 이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에 ‘복수전공 :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(코스명)’으로 기재하며,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편성학점 중 15학점 이상 20학점 미만 이수하고, 12학점 이상을 동일 코스 교과목으로 이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에 ‘부전공 : 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(코스명)’으로 기재한다. (개정 2022. 2. 1, 2022.12. 1)

⑤ 코스별 편성학점 중 7학점 이상 15학점 미만 이수할 경우 ‘코스 이수증’을 발급하며, 기본 교과목(6학점)을 이수할 경우에는 ‘자율주행 모빌리티 트랙 수료증’을 발급한다. (개정 2022. 2. 1)

⑥ 축소형은 ‘트랙’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. (개정 2021.10. 1, 2022. 2. 1, 2022.12. 1)

⑦ ‘트랙’ 교육과정은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, 트랙별 교과목은 2개 이상 편성,

교과목별 3학점 이내로 최대 9학점까지 편성한다. (개정 2021. 9. 1, 2021.10. 1)

⑧ 트랙을 이수할 경우 트랙 수료증을 발급하며, 이수 기준은 트랙 내 각 과목의 C학점 이상으로 한다. (신설 2021.10. 1)

⑨ (삭제 2022. 2. 1)

⑩ 축소형 교육과정(트랙)의 경우 수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(신설 2021.10. 1, 개정 2022. 2. 1)

⑪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, 계절수업, 교외수업, 온라인 수업,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수업 등을 운영 할 수 있다. (신설 2021.10. 1)

⑫ 융합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로 평가하며, A학점의 비율은 40% 이내로 한다. (신설 2021.10. 1, 개정 2022. 6. 1)

⑬ 기타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사운영 관련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 (신설 2021. 9. 1)

제 5조 (교육과정개발 및 개편) ① 교육과정 개발은 「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,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확정한다. (개정 2022. 2. 1)

② 교육과정의 편성은 개발, 개편, 단순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1. 1)

제 6조 (교육과정 편성) ① 융합전공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양 학점은 학사내규 제 18조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신산업동향과 지역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역량 기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

③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 (개정 2022. 2. 1)

제 7조 (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임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이며,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8조 (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) 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반영한 「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」를 제출한다. (개정 2022. 2. 1)

② 「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」를 통해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. (개정 2022. 2. 1)

제 9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제4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졸업생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